

『2024년 차세대작가 프로모션 전시 지원』 공모 요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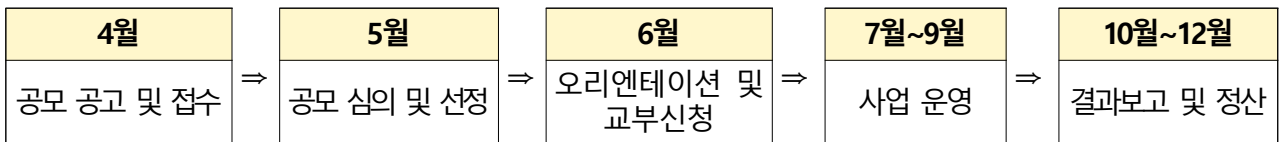
문화체육관광부와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는 국민의 문화 향유 확대와 미술시장 유통 활성화를 위해 「미술품 대여사업」을 추진하고 있으며, 그 일환으로 <차세대작가 프로모션 전시 지원> 사업에 참여할 단체(기업)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1 공모개요

- (공 모 명) 2024년 차세대작가 프로모션 전시 지원
- (접수기간) 공고일 ~ 2024년 5월 14일(화), 17:00까지
- (지원목적) 청년작가 시장 진입 지원 및 차세대 작가 발굴을 통한 미술시장 유통 활성화
- (지원대상) 미술 전시 기획 및 운영이 가능한 민간단체(기업)
- (지원내용) 차세대 작가 전시 및 공간 기획, 행사 운영의 직접경비 지원
- (지원규모) 총 3억9천8백만원, 3건 내외 선정 (※심의를 통해 차등 지원)
- (전시장소) 마포구 내 전시를 개최할 수 있는 공간 (※ 타지역 불가)
- (전시기간) 2024년 7월~10월 중 21일 이상 (※미술주간(9.1.~9.11.) 포함 운영 우대)

2 추진일정

※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세부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.



3 지원요건

- (지원자격) 사업자등록증(개인/법인)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민간단체(기업)

지원불가 대상

- 대한민국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해외 단체의 지사
- 관례적인 회원전, 단체전 및 학교 단위의 졸업작품전
- 지방자치단체 및 국비·지자체비로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(기업)
- 동일 사업 또는 지원내용으로 국고보조금 및 중앙문예기금을 2024년 수혜받은 단체(기업)
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단체(기업)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경우
-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단체(기업)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경우
- 사업자등록증 소지 단체(기업)가 휴·폐업 중인 경우
- 예술인복지법 제6조 2 불공정 행위로 처벌된 단체(기업)
- 기획재정부『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』제31조 2 에 해당하는 단체(기업)
- 문체부『국고보조금 운영 관리지침』제7조,제10조 제1항 제1호 바~사목에 해당하는 단체(기업)
- 문체부『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』제15조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(기업)
- 『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』 제2조, 『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 법률』 제37조 제2항 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(기업)

4

지원내용

○ (지원금 편성·사용 의무사항)

- 지원금은 공급가액으로만 편성 가능하며, 부가세는 지원금으로 편성 또는 지출 불가
- 지원금 편성 시 명확한 산출근거가 없거나 과도한 편성일 경우 축소·조정될 수 있음
- 지원금은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지정한 사업기간 내에 사용하여야하며 사전 및 사후 활용 불인정
- 지원금의 잔액 및 이자 발생 시 국가로 반납, 이월 불가
- 지원금은 현금으로 인출 불가하며, 사업기간 동안 보조금통장 해지 불가
- 지원금은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 검증 이행 필수

○ (지원금 편성기준)

- 아래 편성 기준 외 예산 활용 희망시 예술경영지원센터에 문의 후, 승인 필요

목	세목	편성가능 항목	편성 기준	의무사항
인건비	기타 인건비	-총괄기획자비 -기타인건비 -단기인력비	- 총괄기획자 : 외부기획자 또는 신청주체 대표자 - 기타인건비 : 전시장 자킴이, 코디네이터 등 (월60시간 이상 또는 3개월 연속 근무자) - 단기인력 : 일용근로자(1개월 최대 6일 한도, 1일 8시간/월 60시간 미만)만 해당	•전체 인건비는 총 지원금의 10.0%를 초과할 수 없음 •신청주체의 소속인력에게 지급 불가(단, 신청주체의 대표자에 한해 총괄기획자비 지급 가능)
운영비	일반 수용비	작품대여/작가사례비	신작 창작비, 구작 대여비, 구작 변형비, 작가 사례비 모두 포함	•총 지원금의 20.0% 이상 책정 필수 •신청주체의 소속인력(대표자 포함)에게 지급 불가
		전문가활용비	강사, 학술행사의 발표·사회·토론자, 원고·편집자, 통·번역자, 전문 도슨트에 한해 편성 가능	•신청주체 소속인력(대표자 포함)에게 지급 불가
		홍보비	홍보물 생산/인쇄, 매체 광고비에 한해 편성 가능	•판매용 아트상품, 아트굿즈 제작/구입 비용 편성 불가 •인적용역 계약 불가 •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준
	공공요금 및 제세	보험료	작품 보험에 한해 편성 가능	•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준
	임차료	물품/장비임차료	행사장소 대관비, 행사물품 및 장비 대여에 한해 편성 가능	•인적용역 계약 불가 •신청단체 보유공간에서 전시 개최시 장소 대관비 책정 불가
	일반 용역비	대행용역비	작품 및 공간 설치/철수, 영상 촬영/제작, 홍보 대행, 부대행사 대행에 한해 편성 가능	

지원불가 항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상비 : 소속직원 인건비, 사무실 임대료, 사무용품 구입, 공과금 등 ○ 자본적 경비 : 자산취득비, 시설비, 수선비, 시설부대비, 전화설비, 서버호스팅 및 솔루션 구입비 등 지원 종료 후에도 활용 가능한 자산성 구입비 등 ○ 부대비 : 업무추진 등을 위한 간담회, 회의비, 식음료비 등 ○ 준비비 : 장소 답사, 준비 등을 위한 교통비, 숙박비, 유류대 등 ○ 기타 :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비용,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 등
---------	---

5

지원조건

○ (필수 이행사항) 지원신청서 상에 필수 이행사항 미준수시 심의에 제한될 수 있음

구분	필수 이행사항
전시장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시 장소는 마포구 내 존재하여야 함 ※네이버지도 상 전시장 주소지가 마포구인 경우만 인정 (타지역 불가) • 마포구 내 여러개 장소에서 전시 개최 가능 • 전시 장소는 실내를 기본으로 하며, 실내기준 최소 30평(99.17㎡)이상 필수 ※(가능) 1개 전시장소에 내부 층이 여러개이거나 공간이 여러개일 경우 면적 합산 가능 ※(불가) 실외 면적과 실내 면적 합산 불가, 전시장소가 2개 이상일 경우 면적 합산 불가 • 전시장소는 실내와 실외를 병행할 수 있으나 실외에서만 전시 개최는 불가 • 전시 개최가 가능한 장소면 모두 가능(공간 제한 없음) • 신청단체(기업) 보유 또는 위탁 운영중인 공간에서 전시 개최시 장소 임차료 책정 불가
전시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시기간은 2024년 7월 1일 ~ 10월 31일 사이에 선택 필수 • 전시기간 중 미술주간 기간(2024. 9. 1. ~ 9. 11.) 포함시 우대 • 설치/철수일 제외하고 주말 포함 21일 이상 전시 개최 필수
작가구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024년 기준 만 19세~만 34세의 한국 국적 작가로만 구성 필수 • 전시 개최시 최소 10명 이상 작가 참여 필수(팀 단위의 작가단체는 1명으로 산정)
부대행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관람객 만족도조사 100부 이상 필수 제출 • 국/영문 리플렛 제작 필수, 작가 및 전시소개 QR 필수 • 관람객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시 우대
지원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원금은 최대 1억4천만 원까지 편성 계획 가능 • 지원금 편성·사용 기준 및 의무사항 준수(2페이지 참조)
가산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업 후원/협력이 <u>확정된</u> 경우 가산점 부여(내용이 허위일 경우 심의 제한)

○ (공모 선정 후 지원단체(기업)의 이행사항)

공모 심의 후, 선정단체(기업)의 이행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오리엔테이션 참석, 필수교육 이수 및 수료증 제출 • 참여작가 등 계약 체결 시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활용 •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따라 관련 계약 체결 시 가입신고 • 전시 공간 확정서 (공간 협약/확정서 제출 이후 교부 가능) • 미술주간 기간 중 미술여행 코스 운영 협조 • 미술주간 내 미술여행 및 홍보물 제작, 만족도조사 등 사업 수행 • 홍보물 제작시 후원(문화체육관광부, 예술경영지원센터, 미술품 대역사업 로고) 표기 •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회계검증, 정산/실적보고 제출 • 이나라도움 교부, 정산, 실적, 정보공시 이행 •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내 행정규칙 준수 •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,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, 예술인 복지법, 개인 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 준수 • 저작권·특허권·디자인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일체의 민·형사상 문제가 없어야 함 • 언론 등 홍보 지원을 위한 콘텐츠 제공 등 홍보 협조 •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조사 및 설문 응답 필수
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6

공모심의

- (심의일정) 2024년 5월 중
- (심의방법) 서류 및 면접심의(총괄기획자 PT) ※ 심의 규모에 따라 면접심의 생략될 수 있음
- (심의항목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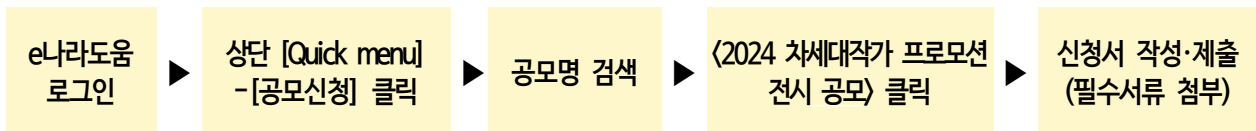
심의지표		착안사항	배점
사업 이해 및 지원주체 역량		- 사업 목적/취지와 지원신청 내용의 부합성 - 지원 주체의 사업 수행 역량 및 기획자 전문성	20
운영 전략	전시기획	- 전시 기획 및 작가 구성 등 콘텐츠의 차별성 - 전시공간의 접근성 및 공간 기획의 참신성	30
	마케팅	- 작가 프로모션 전략의 우수성 - 관람객 모객 전략의 구체성	20
기대 성과		- 전시 화제성 및 파급 효과 - 제시한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타당성	30

※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결과 발표(선정단체 개별 연락)

7

공모접수

- (접수기간) 공고일 ~ 2024. 5. 14.(화), 17:00까지
- (접수방법)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(www.gosims.go.kr)을 통해 신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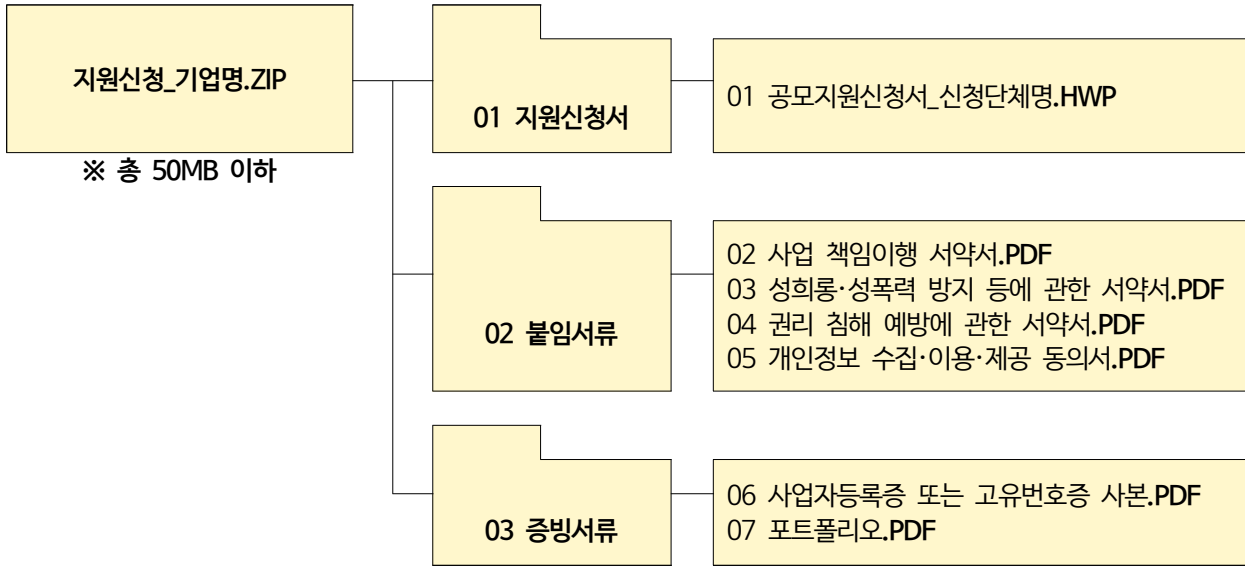


※ 타 경로 제출 불가

- (제출서류)

no.	제출서류	제출여부	제출방법
1	e나라도움 지원신청서	필수	e나라도움 시스템에서 작성·제출
2	공모지원신청서(지정서식/한글파일) *PDF 제출 불가	필수	e나라도움 시스템에 첨부파일로 제출
3	[붙임1] 사업 책임이행 서약서(PDF)	필수	
4	[붙임2] 성희롱·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(PDF)	필수	
5	[붙임3] 권리 침해 예방에 관한 서약서(PDF)	필수	
6	[붙임4]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(PDF)	필수	
7	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(PDF)	필수	
8	포트폴리오(PDF) *자유양식 10페이지 이내	선택	

○ (e나라도움 첨부파일 등록방법)



8

공모 지원 유의사항

- 신청주체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주체에게 있음
- 신청내용과 실제 운영내용이 상이하거나 허위일 경우 사업지원 축소 또는 제외될 수 있음
-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일부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정주체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이행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- 지원기간 중 사업자의 휴·폐업 및 지원불가 법률에 위배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
- 저작권·특허권·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및 초상권·성명권 등의 권리를 포함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일체의 민·형사상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하며, 문제 발생 시 사업 제외될 수 있음
- 접수기간 내 e나라도움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함
-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내용 수정·추가 불가
- 신청시 작성한 자료 내용은 공공의 목적으로 공개될 수 있음
- 접수 마감 당일 e나라도움 시스템 과부하로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 제출 권고 (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 및 장애신고 문의 : 1670-9595)

9

사업문의

- (사업문의) 02-708-2298, 2281 / artre@gokams.or.kr
 - 전화문의 가능 시간 : 평일(월~금) 10:00~11:50, 13:00~16:00까지
 - ※ e나라도움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연락 요망 : 1670-9595